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7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조경태・인요한・박준태

곽규택 · 송석준 · 이헌승

서명옥 • 배준영 • 성일종

조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 소멸의 위험에 빠진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성은 수도권과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주된 원인임. 비수도권 도시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한 인구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 공동화의 위기를 맡고 있으며, 반면 수도권은과도한 인구유입에 따른 기형적인 고비용 도시구조의 형성으로 성장잠재력을 잃어 가고 있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불합리한도시구조를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의 구심점인 될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함.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에 기반을 둔 도중심체제에 산업화시대의 시 체제가 가미된 혼합 형태로서 첨단 정보화시대에 효율적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더구나 도와 광역시체제가 완성된 1995년 이후 인구, 산업, 도시 생태 등 지역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나 관할 구역의 확장 및 변경은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 쇠퇴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음. 한편으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인구의절반이나 거주하는 과밀도시 지역으로 변하였지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관할 구역은 1963년 서울 대확장 당시의 경계를 유지하여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와 도의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고 수 도권의 생활과 행정권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시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 하고자 이법을 발의함.

주요내용

- 가. 국가는 광역시·특별자치시와 도·특별자치도를 통합하여 상생발 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별광역시를 설치하고 지원함(안 제5조).
- 나. 국가는 관할구역 변경이 필요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에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6조).

- 다. 시·도 통합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 시·도지사의 통합 건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추진 공동위 설치 후 입법 등 조치
 - 통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른 통합공동추진위원회의 설치
- 라. 시·도 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도 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 통합 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통합 시·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 입법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
 -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30명 이내로 함.
- 마. 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단계별로 특별광역시와 시·군·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안 제12조).
- 바. 국가는 특별광역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광역시와 시·군·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제14조).
- 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와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는 특별광역시로 우선 이관함(안 제15조).

- 아.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
- 자. 통합 시·도 등에 대한 특례 등(안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 및 인사 보장, 자치행정의 확대, 자치교육의 실현 등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례(안제22조)
 - 시·도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 시·도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의 예산 지원 및 특례(안 제23조)
 - 특별광역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특별광역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안 제24조).
 - 통합 시·도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시·도에추가하여 보통교부세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설치 등(안 제25조)
 -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26조)
 -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하여 국무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 특별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양도세· 관세·상속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안 제28조)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시와 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 및 변경에 따른 추진체계 및 특례 등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인근도시와의 경제·문화·생활을 통합한 연계발전을 추진하여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시·도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지 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광역시·특별자치시와 도·특별자 치도가 통합하여 같은 호에서 정한 특별광역시를 설치하는 것
 - 2. "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이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도·특별자치도가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주민의 요청에 부응하여 시·도 통합 및 시·도 간 관할구역 변

- 경을 추진함과 아울러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치권의 확대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통합 및 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시·도 통합 및 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시·도 통합 및 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도 통합 및 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

- 제5조(시·도 통합) 국가는 지역적·역사적·경제적 공통성을 가진 광역시·특별자치시와 도·특별자치도를 통합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할수 있는 특별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 제6조(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 국가는 인접하여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도·특별자치도의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지리적 여건, 교통 여건,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구역 변경이 필요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

자치도에 대하여 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 제7조(특별광역시의 설치 등) ① 특별광역시를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및 군을 특별광역시의 관할 아래에 둔다.
 - ② 이 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도·특별자치도 간에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 구역 안에 시·군을 둘 수 있다.
- 제8조(시·도의 통합절차) ① 제2조제1호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합을 건의할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통합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의사가 확인되면 해당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통합 시도의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통합추진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수 있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통합 시·도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의 결과를 제출받으면 통합 시·도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행·재정적 특례 발굴)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통합 시·도의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행·재정적 특례를 발굴하여 제10조에따른 지원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제10조(시·도 통합지원위원회) ① 시·도 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도 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원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통합 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2. 통합 시·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입법조 치에 관한 사항

- 3.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통합 시·도로 의 단계적 이양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4. 통합 시·도의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 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통합 시·도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30명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 무위원회를 둔다.
-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협의체) ① 시·도 간 관할구역 변경을 원활히 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와 도·특별자치도 내 관할구역 변경 대상 시·군 간에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 협의체의 구성, 논의사항,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이양

- 제12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국 방·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 별로 특별광역시와 시·군·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 이양 대상의 확정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4. 시·군·구에 우선적으로 이양할 사무와 특별광역시에 이양할 사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 5. 재정이 소요되는 복지사무 등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광역시의 재원부담과 시·군·구의 집행 등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특별광역시

- 와 시・군・구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광역시장에게 통보하고, 특별광역시장은 시·군·구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국가는 특별광역시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광역시와 시·군·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특별광역시와 시·군·구는 지역 및 국가경쟁력을 신장하는데 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하여 규제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 례로 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특별광역시와 시·군·구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조례로 5

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특별광역시장과 시·군·구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특별광역시장과 시·군·구의 장에게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①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 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특별 광역시와 시·군·구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1. 해당 사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 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 ② 특별광역시의 구역 전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가 아니더라도 자치분 권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특별광역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1. 특별광역시와 시·군·구의 행정상·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특별광역시와 시·군·구의 의 견을 고려할 것
- 제16조(우선 이양대상사무)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에 종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로 이양한다. 이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 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 ②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는 제1항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5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

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특별광역시장 및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이관의 범위 및 내용과 이관되는 단위사무별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 2. 이관사무의 최근 3년간 재원별·단위사무별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
- 3. 재정지원의 규모 방법 시기와 그 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
- 제18조(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① 특별광역시장 및 시·군·구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이양대상사무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심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신규 설치 금지) ①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광역시장 및 시·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통합 시·도에 대한 특례 등

- 제20조(불이익 배제의 원칙) 시·도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시·도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 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시·도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시·도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합 시·도는 폐지되는 시·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 제22조(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 ①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에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 및 인사 보장, 자치행정의 확대, 자치 교육의 실현 등자치권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례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특별법에서 정한다.
- 제23조(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시·도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 있는 시·도 또는 통합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시·도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에 한한다)의 일부를 통합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통합 시·도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시·도가 각각 편성·의결 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 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 ④ 통합 시·도는 통합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시·도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특례) 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광역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광역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특별광역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매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특별광역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특별광역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사무를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부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양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 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특별광역시 또는 시·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25조(통합 시·도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특별광역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특별광역시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 ②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시·도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시·도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특별광역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 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 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시·도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시·도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6조(국토개발을 위한 특례) ① 특별광역시장은 통합 시·도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경제·산업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 전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 야 한다.
 - ③ 국가는 종합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특별법에서 정한다.
-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 ① 지원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하여 국무회의에 심의를 요청할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양도세·관세·상속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9조(균형발전기금) ① 특별광역시장은 특별광역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여 특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
 - ②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광역시조례로 정한다.
- 제30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통합 시·도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각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等價性)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제31조(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특례) ① 시·도 간 경계 조정으로 도· 특별자치도 내의 시·군이 구의 형태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에 통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경과규 정을 둘 수 있다.
 - 1.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2 등에서 정한 사무 배분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 2.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서 정한 기존 시·군의 예산 및 재정 등에 관한사항
- 3. 시·군 내의 읍·면이 동으로 바뀌는 경우, 읍·면과 동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법령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존 시·군에 관하여 적용되던 법령 중 주민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 통합된 이후에도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 ② 제1항과 관련된 경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특별법에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